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허용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84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허용 ..... | 2 |



## I. 개요

###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84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2. 4.
- (3) 회 부 일 : 2025. 2. 5.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 권고가 있었음.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허용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br>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u>대부할 수 있다.</u> | 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u>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표 1]과 같이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사용허가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표 1]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

| 구 분          | 사용허가                                                                | 대부                                                                |
|--------------|---------------------------------------------------------------------|-------------------------------------------------------------------|
| 정의           | “행정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일반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국·공유재산<br>종류 | 행정재산<br>(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br>(행정재산 외 모든 국·공유재산)                                        |
| 사용·수익<br>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br>「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br>「공유재산법」 제28조(관리·처분)                         |

자료: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을 바탕으로 작성

□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sup>1)</sup>

“행정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용허가”<sup>2)</sup>이고,

“일반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은 “대부”계약임<sup>3)</sup>.

-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등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sup>4)</sup>, “일반재산”은 “대부”할 수 있음<sup>5)</sup>.

□ 현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사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는 적십자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부 외에 사용허가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sup>6)</sup>.

1) 「국유재산법」 제6조 및 「공유재산법」 제5조

2)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및 「공유재산법」 제2조제7호

3)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및 「공유재산법」 제2조제8호

4)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공유재산법」 제20조

5)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공유재산법」 제28조

□ 개정안은 이러한 법문과 해석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십자사에 대해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이 허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sup>7)</sup>인 적십자사가 전시포로·무력충돌희생자·전상자·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 등의 공익적 사업<sup>8)</sup>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용
- (대한적십자사) 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법 체계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용

문 의 처

02)6788-5509

6)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료,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각각의 동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있어 대상기관·단체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적십자사에 대해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20-0118, 2020. 3. 20.).

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 [ 관련 조문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 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6. (생략)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11. (생략)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③ (생략)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6. (생략)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생략)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생략)